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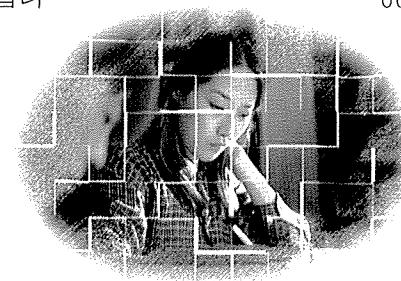
모성보호강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성경제활동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출산과 육아문제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인 메킨지의 우먼코리아 보고서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90%까지 확대해야만 한국이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지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단절, 사장되고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유력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여성인력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 급격히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성보호법의 주요내용

지난 7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과 육아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성보호법은 현재의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연장하고 육아 휴직기간 동안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며, 출산 휴가 연장 30일분에 대한 비용과 육아휴직 급여비용을 고용보험 등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최초로 실현

그 동안 모성보호 비용은 여성근로자 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모성보호법에서는 모성보호강화에 따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최초로 실현하였다는 데

모성보호 강화는
유능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로
기업,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며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한 명 숙

여성부장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모성보호강화의 추세에 부응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출산휴가의 최저기준을 12주에서 14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이유는 그 길만이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세수를 증대시켜 경제적 부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남녀고용평등 실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고 남성의 과도한 부양의무를 완화시켜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법 -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권 실현

그러나 모성보호법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활동참여라는 경제적 측면말고도 임산부(임신중인 여성, 출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법제도적으로 보다 강화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모성보호법은 임신 및 출산후 1년 미만인 여성근로자와 아이(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인 여성근로자의 휴일 시간외 야간근로 등의 제한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여성경제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휴일근로 등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모성보호 강화 - 우리 모두를 위한 길

모성보호의 강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1999년 1.42명)상황에서 유능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시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유능한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고, 여성의 직장에 대한 귀속감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려는 사회구성원에게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하여 가정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조 할 것이며, 특히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다음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